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의원 대표 발의】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60호로 2018년 11월 13일 김길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목적, 수상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상장 및 시상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청백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대리 수상 및 시상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청렴 결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우리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